



2015년 2월 20일 제 59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동향 통상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기후변화] **美 국무부-환경보호청(EPA), 해외 거주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미국 재외공관의 현지 대기질(air quality) 측정 능력 향상 및 수집된 데이터의 대외 공유를 위한 「Air Quality Partnership」 체결(2.18)** : 국무부는 초미세 먼지(PM 2.5) 농도 수치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재외공관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EPA의 AirNOW 시스템을 통해 공개 예정

\* AirNOW 시스템 : 미 환경보호청이 미국내 구축한 야외 대기오염지수를 알려주는 온라인 플랫폼

[항공산업] **美연방항공청(FAA), 무게 55파운드 이하 소형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안전규정(안)에 대한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 개시 발표(2.15)** : △무인항공기 운용자(operator)는 17세 이상 △무인항공기 사전 등록 및 고유식별 마크 부착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간에만 비행 허용 △최대비행속도 시속 100마일, 최대 고도 500피트, 최소가시거리 3마일 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규정(안) 제시

[항공산업] **미국무부, 군용 무인항공시스템 판매통제 강화 및 무인항공시스템 사용 원칙을 담은 「미국산 군용 및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 수출 정책」 발표(2.17)** : △군용 무인항공시스템중 민감 시스템(sensitive system)의 판매·이전은 정부간 대외군사판매제도(FMS)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령국은 동 시스템 운용에 있어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준수 필요 △모든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의 판매·이전 관련 사항은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따라 검토될 예정

\* 금번 무인항공시스템 수출정책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적절한 참여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 미 국무부-환경보호청간 Air Quality Partnership 체결

미 국무부는 2.18(수) △대기오염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기오염 관련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무부-환경보호청(EPA)-해외주재 공관들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새로운 「국제대기질 프로그램(International Air Quality Program)」을 추진한다는 의향서에 John Kerry 국무장관과 Gina McCarthy 환경보호청장이 서명하였다고 발표

### 1

## 미 국무부-환경보호청간 대기질 데이터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출범 (국무부 보도자료)

-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나,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대기의 질에 관한 데이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국무부와 환경보호청은 금일(2.18) 양 부처가 미국의 재외공관과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의향서(statement of Intent)에 서명하였음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음.
  - 국무부로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민과 공무원들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바, 동 파트너십은 다수의 재외공관에서 대기질에 관한 정보와 전문성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금번 파트너십의 주요 특징은 현존하는 환경보호청의 AirNOW 시스템을 재외공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대기질 관련 데이터를 대외 공개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대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 AirNOW 시스템 : 미 환경보호청이 미국내 구축한 야외 대기오염지수를 알려주는 온라인 플랫폼
  - 이와 관련한 Fellowship 프로그램은 미국의 기술전문가들을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재외공관의) 대기질 측정 데이터 분석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접수국 정부(host government)와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 동 파트너십은 미국 정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汎정부차원의 외교력 전개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의 건강 보호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과학계와 오바마 대통령의 「열린정부구상(Open Government Initiative)」 실현에도 도움을 주는 것임.

## 2

## 국제대기질 프로그램(International Air Quality Program) 관련 국무부 Fact Sheet

- 미 국무부와 환경보호청이 맺은 새로운 「대기의 질과 관련한 파트너십 (air quality partnership)」은 선택된 재외공관에서 대기의 질과 관련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오염이 개인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대기의 질과 관련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임 .
- 동 프로그램에 따라 국무부는 초미세 먼지(PM 2.5) 농도 수치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재외공관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환경보호청의 AirNOW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끝/

※ 내용 관련 문의: 문인석 1등서기관 (202-939-5671, ismoon72@gmail.com)

# 미 교통부, 소형 무인항공기 운영·등록에 관한 규정 발표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무게 55파운드 이하 소형 무인항공기(이하 UAS\*)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안전규정(안)을 제시하고 향후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발표(2015.2.15)

\* UAS는 무인항공기 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의 약자로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와 이의 운영에 관련된 장비를 포괄하는 용어임

## 1 규정제정 배경

- 미 연방항공청(FAA)은 소형 UAS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2008년부터 이를 미국 국가공역체계(National Airspace System)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 (2008.4월 소형 UAS 규정제정위원회 구성)
- 미 연방의회도 FAA 현대화 및 개혁법안(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에서 교통부 장관에게 UAS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검토와 안전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시
  - 이에 따라 금년 2.15일 미 연방항공청은 소형 UAS의 운영·등록에 관한 규정(안)을 발표
    - ※ 그동안은 레저목적 이외의 상업적 UAS 활용은 관련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며 영화촬영, 시설물관리 등의 제한된 영역에 대해 FAA의 별도 검토과정을 거쳐 운영허가(총 29개 업체)

## 2 규정(안)의 주요내용

- 연방항공청은 연방규정 14장(14 CFR)에 Part 107을 신설하여 소형 UAS의 민간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제시하였음
  - (적용대상) 소형 UAS는 무게 55파운드(약 25kg) 이하로 제한
  - (운영면허) UAS를 조종하는 자를 운영자(Operator)라고 정의

- 운영자는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FAA로부터 항공학적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소형 UAS 운영면허를 취득해야함
- 면허 취득 이후 매 24개월 마다 테스트를 거쳐 면허자격 유지여부 결정
- (항공기) 소형 UAS에 대해 연방항공청의 감항능력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은 불필요하며, 대신 항공기를 사전 등록하고 고유식별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비행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조치
  - \* 감항능력(堪航能力)증명 : 항공기가 비행에 필요한 안전성, 신뢰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항공감독 당국이 확인하는 절차
- (운영제한) 소형 UAS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운영제한 규정 제시
  -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Visual line-of-sight 또는 VOS)내에서 운영
  - 운영에 직접 관련하고 있지 않은 인체의 상공에 비행 금지
  - 주간에만 비행 허용(일출~일몰시간)
  - 최대비행속도 시속 100마일, 최대 고도 500피트, 최소가시거리 3마일 이상
  - 이동 중인 차량이나 항공기에서 운영 불가(수상선박에서 운영은 가능)
  - 1명의 운영자가 동시에 2대 이상의 UAS 운영 불가
- (공역할당) 소형 UAS를 미국의 국가공역체계(NAS)에 통합시키되 Class G 공역에서만 별도의 사전허가 없이 운영 가능하도록 할당
  - Class A(18,000피트 이상)에서는 운영 불가
  - Class B,C,D,E에서는 항공관제소의 사전 승인하에 운영 가능

### 3 관련 업계 반응

- 이번 소형 UAS의 상업적 활용 관련 규정제정 발표에대해 그동안 관련 서비스 사업 진출을 추진하던 업계는 크게 환영
- 국제 무인항공기 연합 Briann Wynne 회장은 이번 규정발표를 “무인기 기술을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

- 특히, 정밀농업, 소방, 송유관 및 정유시설 모니터링, 인프라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서 무인기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아마존, 구글 등의 일부 업체는 이번 규정이 최근의 무인기 기술발전이 고려되지 않고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방항공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
- 특히, 무인기를 이용한 배송서비스인 "Prime Air"를 추진 중인 아마존 (Amazon)은 가시거리 내 운영, 인체상공 비행금지 등의 규정으로 인해 관련 서비스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
- 아마존의 Paul Meisener 부사장은 "연방항공청은 업계와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마존은 무인기 배송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혔음

/끝/

※ 내용 관련 문의: 이상현 국토관 (202-587-6146, simplewate@naver.com)

# 미국의 무인항공시스템 수출 정책

미 국무부는 2.17(화) △군용 무인항공시스템((Military Unmanned Aerial System) 판매통제 강화 △무인항공시스템 사용 원칙 및 △관련 신정책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미국산 군용 및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 수출 정책」에 관한 Fact Sheet을 발표

## 1 미국의 무인항공시스템 수출 정책 수립 배경

- 무인항공시스템 개발 및 배치를 선도하고 미국은 미국산 무인항공시스템의 판매(sales)·이전(transfer)·추후 사용처(subsequent use) 관리가 미국의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정책 기조 및 경제안보를 포함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일치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
- 본 정책에 담긴 군용 무인항공시스템의 판매·이전·추후 사용 관리에 대한 내용은 미국의 '재래식 무기이전 정책(Conventional Arms Transfer Policy)'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역할도 함.
  - 본 정책의 내용은 군수물자의 대외 이전을 규율하고 있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국무부 소관)'과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USAID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일치함.
- 본 정책의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 판매·이전·추후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국의 모든 상업적 이전을 규율하고 있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상무부 소관)'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역할도 함께 함.

- 본 정책은 재래식 무기이전 정책에 근거하여 사례별(case by case)로 미국산 군용 무인항공시스템(무기 장착 시스템 포함)의 잠재적 수출 관련 사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음.
  - 미국산 군용 무인항공시스템의 판매 및 이전 조건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감한 시스템(sensitive system)의 판매 및 이전은 정부간 (government to government) 대외군사판매제도(FMS)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잠재적 이전(potential transfer)에 대한 검토는 미 국방부의 기술보안 및 해외공개 절차(Department of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nd Foreign Disclosure process)를 통해 이루어짐.
    - 판매 및 이전을 위해서는 수령국의 최종 사용에 대한 약속 (end-use assurance)이 필수적임.
    - 최종 사용에 대한 감시(monitoring)와 잠재적 추가보안조건 (potential additional security conditions)도 요구됨.
    - 모든 판매 및 이전은 하기 3항에 명시된 (무인항공시스템의) 적절한 사용 원칙에 대한 (수령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
  - 본 정책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하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미국의 입장을 지속 유지하고 있음.
    - MTCR 카테고리-1(로켓시스템 및 무인비행체)의 범주를 벗어나는 군용 및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의 이전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strong presumption of denial).
- \* 300km 이상의 비행거리와 500kg 이상의 탑재중량을 가진 무인항공시스템
- 그러나, 해당 수출이 MTCR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확산 및 수출 통제 요소에 의해 정당화될 경우에는 수출이 허가될 수도 있음.



## 미국산 군용 무인항공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원칙 (Principles for Proper Use)

- 미국은 다음과 같은 미국산 군용 무인항공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원칙을 세워 동 시스템이 적법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되도록 해 나갈 것인바, 모든 수령국은 미국산 군용 무인항공시스템 판매 및 이전 허가를 받기 이전에 동 사용 원칙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의해야만 함.
  - 수령국은 동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준수해야 함.
  - 자위권 등 국제법적 근거를 갖춘 무력 사용의 경우에만 무장 무인항공시스템 또는 기타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인항공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 수령국은 미국산 군용 무인항공시스템을 불법 사찰 혹은 자국민 억압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의도하지 않은 사상 및 피해(unintended injury and damage)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령국은 무인항공시스템 운용인력(operator)에 대해 적절한 기술적·이론적 훈련을 제공해야만 함.
- 아울러 미국은 향후에 성안될 상업용 MTCR 카테고리-1에 포함될 시스템을 비롯하여 미국산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의 판매·이전·추후사용 관리에 적용되는 엄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모든 미국산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은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검토될 것임.

## 새로운 정책의 영향

- 금번 새로운 수출정책은 엄격하게 잘 정비된 체계 마련을 통해 미국이 (무인항공시스템의) 판매 및 이전에 있어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exercise restraint in sales and transfers) 하고, 다음과 같은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해관계를 증진시켜 줄 것임.
  - 신뢰받는 협력대상국들의 작전 능력 및 역량 제고(enhancing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capacity of trusted partner nations)

-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협력대상 국가와의 상호 운용성 증진  
(increasing U.S. interoperability with these partners for coalition operations)
- 협력대상국으로부터 동 시스템의 책임있는 운용 보장 확보  
(ensuring responsible use of these systems)
- 동 운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 구조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완화(easing the stress on U.S. force structure fro these capabilities)
- 아울러, 금번 수출정책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적절한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미국 산업 발전의 건강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포함한 국가안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미국은 군용 무인항공시스템의 판매·이전 및 추후 사용 관리에 있어 다른 국가들 또한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채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임.

/끝/

※ 내용 관련 문의: 문인석 1등서기관 (202-939-5671, ismoon72@gmail.com)

#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2.20 금)

DOW(0.24% 하락) 달러 환율(0.22% 하락)

재경관실

## [주가]

	'13말	14.10말	11말	12말	15.1말	2.18	2.19	2.2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195.42	17,827.75	17,983.07	17,416.85	18,047.58	18,029.85	<b>17,985.77</b>	-0.24%	3.27%	4.60%
Nasdaq	4,176.59	4,566.14	4,787.32	4,777.44	4,683.41	4,899.27	4,906.36	<b>4,924.70</b>	0.37%	5.15%	7.85%
S&P 500	1,848.36	1,994.65	2,072.83	2,080.35	2,021.25	2,100.34	2,099.68	<b>2,097.45</b>	-0.11%	3.77%	5.15%
KOSPI (한)	2,011.34	1,964.43	1,980.78	1,915.59	1,949.26	N/A	N/A	<b>N/A</b>	N/A	N/A	N/A
NIKKEI (일)	16,291.31	16,413.76	17,459.85	17,450.77	17,674.39	18,199.17	18,264.79	<b>18,332.30</b>	0.37%	3.72%	11.69%
FTSE100 (영)	6,749.09	6,463.55	6,723.42	6,547.00	6,810.60	6,898.13	6,898.08	<b>6,888.90</b>	-0.13%	1.15%	6.58%
DAX (독)	9,552.16	9,114.84	9,974.87	9,805.55	10,737.87	10,895.62	10,961.00	<b>11,001.94</b>	0.37%	2.08%	20.25%

## [금리]

(단위: %)

	'13말	14.10말	11말	12말	15.1말	2.18	2.19	2.2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7	0.01	0.02	0.03	0.03	0.02	0.02	<b>0.02</b>	0.00	-0.01	0.01
T/NOTE (10년)	2.99	2.32	2.24	2.20	1.77	2.14	2.07	<b>2.11</b>	0.04	0.34	-0.21
T/NOTE (30년)	3.90	3.04	2.95	2.76	2.33	2.73	2.70	<b>2.73</b>	0.03	0.40	-0.31
LIBOR (Dollar, 3월)	0.25	0.23	0.24	0.26	0.25	0.26	0.26	<b>0.26</b>	0.00	0.01	0.03

## [환율]

	'13말	14.10말	11말	12말	15.1말	2.18	2.19	2.2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068.50	1,107.90	1,090.95	1,093.50	1,113.26	1,113.40	<b>1,110.90</b>	-0.22%	1.59%	3.97%
Y / US\$	105.30	110.95	118.21	119.55	117.80	119.23	119.09	<b>118.41</b>	-0.57%	0.52%	6.72%
US\$ / EUR	1.3736	1.2564	1.2448	1.2128	1.1338	1.1374	1.1378	<b>1.1298</b>	-0.70%	-0.35%	-10.08%
CNY / US\$	6.0628	6.1099	6.1465	6.2184	6.2507	6.2796	6.2780	<b>6.2794</b>	0.02%	0.46%	2.77%

## [유가]

	'13말	14.10말	11말	12말	15.1말	2.18	2.19	2.2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 선물 (\$/배럴)	98.42	81.12	73.69	54.12	44.53	53.53	49.86	<b>51.16</b>	2.61%	14.89%	-36.93%
Dubai (\$/배럴)	107.88	84.82	73.33	53.62	44.63	56.18	56.21	<b>56.21</b>	0.00%	25.95%	-33.73%

\* 최종종가 기준 작성